**별첨 AA-2:**  
**뉴욕시 자금 및 주택 지원에 대한 신청자의 사법 문제 평가**

[COMPANY LETTERHEAD]

[PHONE NUMBER]

[EMAIL ADDRESS]

[FAX NUMBER]

날짜: \_\_\_\_\_\_\_\_\_\_

[APPLICANT’S NAME AND ADDRESS]

제목: [PROJECT NAME]

로그 번호:\_\_\_\_\_\_\_\_

안녕하십니까?

상기 명시된 프로젝트에 지원하신 귀하의 거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죄 판결 내역이 귀하의 신원 조사 중 귀하의 기록에서 드러났으며 이는 귀하의 주택 자격 평가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LIST CONVICTION RECORD(S), INCLUDING CASE #, CHARGE, AND DATE OF CONVICTION

**귀하의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설명 및/또는 재활 증거를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제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십(10) 영업일 이내에 이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하우징 커넥트(Housing Connect)를 통하거나 아래 정보를 [EMAIL / MAIL / FAX]를 통해 당국 사무실로 보내거나 [PHONE NUMBER]번에 연락하여 대면 또는 가상 미팅을 예약하십시오.**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 구제 증명서 또는 선행 증명서
* 이전 범죄 행위에 기여했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록 또는 완료의 증거.
* 구금 중 또는 구금 후 직업, 교육, 근무 또는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의 증거.
* 유죄 판결 또는 석방 이후 고용 상태 및 이력.
*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 성직자, 가석방 감독관, 교육자, 고용주, 이웃 및 기타 지역 사회 거주자, 집주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사회 구성원의 추천서.
* 범죄가 저질러진 상황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서술을 포함한 기타 관련된 요소.
* 귀하의 사법 관련 이력이 귀하 또는 신청서상의 다른 개인의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로서의 직접적인 결과라면, 첨부된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권리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NAME]

소유주/관리자

[INSERT EMAIL ADDRESS] [INSERT PHONE NUMBER] [INSERT FAX NUMBER]

**[INSERT ENGLISH HOUSEHOLD SIZE AND INCOME CHART BELOW OR ATTACH AD]**

주택 신청 프로세스 또는 이의 제기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HPD 매매 담당 부서: HPD 신청인 상담전화번호, 212-863-7990
* HDC 매매 담당 부서: HDC 준법 상담전화번호, 212-227-6411

[INSERT PAGE BREAK]

뉴욕시 주택 보전 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 및

뉴욕시 주택 개발 공사(New York C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른 권리 통지**

**주택 신청인 대상[[1]](#footnote-2)**

연방 여성 폭력 방지법(VAWA)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VAWA 보호는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2]](#footnote-3) 이 통지서는 VAWA에 따른 신청인의 권리와 HPD 및 HDC("당국"으로 통칭), 그리고 HPD/HDC가 매매하는 주택에 대한 신청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모든 마케팅 상담원 또는 기타 소유주 대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신청인 가구의 보호**

뉴욕시 주택 커넥트(NYC Housing Connect)를 통해 매매되는 주택은 여러 연방, 주 또는 지방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및 귀하와 함께 거주할 사람("세대원")이 다른 방법으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세대원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과거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청이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가구는 세대원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과거에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따른 불리한 요소를 근거로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 생존자인 신청인은 VAWA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 이유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고자 할 경우 주택 신청에 대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신용 불량, 임대료 미납, 불량 임대 기록 및/또는 범죄 기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청구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관련 기간에 대한 지침은 개발부의 마케팅 상담원이 보내는 거부 통지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VAWA 권리의 근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뉴욕시 가정 사법 센터(New York City’s Family Justice Centers) 중 한 곳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onx Family Justice Center, 198 East 161st Street, 2층, 718-508-1220

Brooklyn Family Justice Center, 350 Jay Street, 718-250-5111

Queens Family Justice Center, 126-02 82nd Avenue, 718-575-4545

Manhattan Family Justice Center, 80 Center Street, 212-602-2800

Staten Island Family Justice Center, 126 Stuyvesant Place, 718-697-4300

가정 사법 센터는 가정 폭력 및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방문 시 본 통지서의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기밀 유지**

관련 당국 및 모든 마케팅 상담원/소유주 대표는 VAWA에 따라 신청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인 신청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시간 동안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 정보는 법률에 따라 당국 또는 마케팅 상담원/소유주가 공개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

VAWA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다른 연방법에 따른 스토킹 및 주와 지역 법률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주택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UD 주택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다루는 HUD의 VAWA 최종 규정 사본은 **www.gpo.gov/fdsys/pkg/FR-2016-11-16/pdf/2016-25888.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적 관계를 피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방법은 **NYC 가정 폭력 핫라인(NYC Domestic Violence Hotline)** **전화 1-800-621-4673번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연인 간 파트너 폭력의 생존자를 위한 추가 뉴욕시 자원으로 위의 "신청인 보호 조항"에 나열된 **가정 법무 센터(Family Justice Centers)**가 포함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이거나 도움을 구하는 신청인은 **국립 중앙 범죄 센터의 스토킹 자원 센터 피해자 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s Stalking Resource Center)**  **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를 방문하십시오.**

성폭력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뉴욕시 성폭력 방지 연맹(NYC Alliance Against Sexual Assault): 212-229-0345** 또는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Rape Abuse and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 1-800-656-467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스토킹을 포함한 모든 범죄 피해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인 귀하 또는 다른 개인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라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귀하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이의 제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footnote-ref-2)
2. 주택 제공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태, 장애 또는 연령과 같은 보호 대상 특성에 근거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HUD 지원, HUD 보장, 저소득 주거 세액 공제 및 HPD/HDC 융자 주택은 실제적이든, 인지적이든,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또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다른 적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footnote-ref-3)